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- 116호

『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7월 27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조례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“목적” 정비(안 제1조)
- “지도사자격” 정비(안 제2조)
- “지도사위촉” 정비(안 제3조)
- “심사위원회” 정비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20일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3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”로, “명예농촌지도사(이하 “지도사”라 한다)”를 “명예농촌지도사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도사는 시”를 “명예농촌지도사(이하 “지도사”라 한다)는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.

제3조(중전의 제4조)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도사의”로, “심사위원회”를 “명예농촌지도사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강화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, 옹진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,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업무담당농촌지도사”를 “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, 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,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4조(중전의 제3조)제1항 중 “지도사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, “명예농촌지도사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”를 “심사위원회의”로,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장을 수여한다”를 “지도사를 위촉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</u>	<u>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의 농촌지도사업</u>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영농실천으로 성공한 우수한 자를 <u>명예농촌지도사(이하 “지도사” 라 한다)</u> 로 위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인천광역시</u> <u>시</u> ----- ----- ----- <u>명예농촌지도사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지도사 자격) <u>지도사는 시에 주소</u> 를 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	제2조(지도사 자격) <u>명예농촌지도사(이하 “지도사” 라 한다)는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도사 위촉) ① <u>지도사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명예농촌지도사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 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위촉장을 수여한다.</u>	제4조(지도사 위촉) ① <u>시장은</u> ----- ----- <u>심사위원회의</u> ----- <u>지도사를 위촉한다.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4조(심사위원회) ① <u>시장은</u>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<u>심사위원회를</u> 둔다.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, 위원은 <u>강화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, 용진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,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업무담당농촌지도사, 농촌지도자인천광역시연합회장이</u> 된다. ③ (생략)	제3조(심사위원회) ① <u>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은 <u>지도사의</u> ----- ----- <u>명예농촌지도사</u> <u>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</u>-----. ② ----- ----- ----- - <u>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, 용진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,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업무담당</u>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 법령	☐ 농촌진흥법 ○ 제4조(사업의 실시 및 조정) ○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협조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 조례 정비 대상	
관련 자료	

관련 법령 발췌 사항

□ 농촌진흥법

제4조(사업의 실시 및 조정)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공공단체 외의 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.

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·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.

1. 연구·개발 기관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

2. 연구·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

3. 연구인력의 양성·확보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
⑤ 삭제

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협조)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음

4. 작성자

- 산업위원회 윤 재 상 의원